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65호 2020. 6. 9.(화)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50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451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10
남해군 조례 제2452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남해군 조례 제2453호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	20
남해군 조례 제2454호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남해군 조례 제2455호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남해군 조례 제2456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남해군 조례 제2457호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8
남해군 조례 제2458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7
남해군 조례 제2459호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	41
남해군 조례 제2460호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43
남해군 조례 제2461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남해군 조례 제2462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74호	남해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3
남해군 규칙 제1175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8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2
남해군 고시 제2020-90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63
남해군 고시 제2020-92호	냉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66
남해군 고시 제2020-93호	도로명주소 고시	68
남해군 고시 제2020-96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16호, 소로2-22, 소로2-26호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70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718호	「이동면 초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 분묘개장 공고(2차)	75
남해군 공고 제2020-719호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76
남해군 공고 제2020-72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금천지구)	77
남해군 공고 제2020-72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양화금지구)	82
남해군 공고 제2020-73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큰양아지구)	86
남해군 공고 제2020-73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천동지구)	90
남해군 공고 제2020-73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사항지구)	94
남해군 공고 제2020-734호	군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녹지)] 공사완료 공고	98
남해군 공고 제2020-737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99
남해군 공고 제2020-753호	2020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관라운영 위수탁 현황 공고	101
남해군 공고 제2020-765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공사완료 공고	102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6, 행정 3046)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50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남해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두 차례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일수는 별표4와 같다.

제1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공무 외의 목적으로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군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특별휴가일수표(제12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경조사 휴가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20일
자녀군입영휴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 을 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 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 석하는 경우(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허가하 지 아니한다.)	영 제7조 및 제7조 의10에 따른 연가일 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
재해구호휴가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 는 공무원	5일 이내
포상휴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 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일 이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 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	

비 고

1.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르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사용은 불가하다.
2. 영 제7조의 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나.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남해군 조례 제2451호

##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 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별표 2]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52호

###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의료업무등의 수당)” 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을 “제2조제2항 및 「수의사법」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으로, “의료업무등” 을 “의료업무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전임 전문직공무원” 을 “일반 임기제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 별표 7의 지급구분표

제4조 중 “제7호” 를 “제8호” 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와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지역등급	전 문 의	일 반 의
병 지	월 791,000원 이하	월 710,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000,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995,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989,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직 급 별		지 급 액
일반직 공무원	의 사	월 1,012,000원 이하
	간 호 사	월 65,000원 이하
	5 급 이 상	월 82,000원 이하
	6 급 및 7 급	월 65,000원 이하
	8 급 이 하	월 40,000원 이하

[별표 5]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제4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180,000원 이하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150,000원 이하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120,000원 이하

[별표 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4호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이하

[별표 7]

수의직렬 공무원의 수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5호 관련)

근무연수별	지 급 액
1년 미만	월 260,000원 이하
1년 이상	월 500,000원 이하

남해군 조례 제2453호

##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54호

##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8조의 2”를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37조 및 법 제39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55호

##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모두 갖춘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추천받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들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남해군 조례 제2456호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를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을 “장애인과 동일한”으로,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로써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을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을 “법 제78조의3제1항”으로,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항”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을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개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

제10조의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균등분 주민세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78조제1항제2호의 그 밖의 법인
2.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3호의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457호

##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는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54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페이스 미조”란 제2조에 위치한 구 제빙창고를 지역민과 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및 교류를 위해 재생한 곳으로 전시·공연·체험·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2. “창작스튜디오”란 군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스페이스 미조에서 예술작품을 창작·판매하는 창작작업공간을 말한다.

**제4조(사업)** 스페이스 미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 창작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스페이스 미조의 관리·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페이스 미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야외 및 옥상정원 등
2. 부대시설 : 식당, 커피숍, 기숙사,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 보호실(모유수유·착유), 남녀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등

## 제2장 스페이스 미조의 관리·운영

**제6조(관리·운영 등)** ① 스페이스 미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 ② 군수는 스페이스 미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수탁업무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스페이스 미조 전시실·공연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3.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전시품 교체·공연장 설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람시간)** ① 스페이스 미조 전시실·공연장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① 군수는 스페이스 미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실·공연장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수탁자 또는 대관자가 주최하는 전시·공연에 대한 관람료를 받으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결정한 경우 결정한 관람료를 남해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10조(관람료 감면)** 남해군이 주최·주관하는 전시·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관람료 면제

- 가.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 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 다.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 라.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관람료 경감(50%)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만,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라. 주민등록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마. 65세 이상 노인
- 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제11조(관람료 반환)** 군수와 수탁자 또는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스페이스 미조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 3. 매표 즉시 관람자의 사정으로 관람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 4. 그 밖의 반환요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 2.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
- 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장 대관 및 입주

**제13조(대관허가)** ① 전시·공연·행사 등을 위하여 스페이스 미조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페이스 미조 대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스페이스 미조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스페이스 미조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제14조(대관허가의 우선순위)** 스페이스 미조를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
3. 각급 교육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단체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체행사
5. 그 밖의 경우 접수 순서대로 정하되 전시·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대관허가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 취소, 사용정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3.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대관료)** ① 제13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한 후 운영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대관의 목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미 받은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2. 관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제1항에 따른 대관료와 제2항에 따른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시설의 설치)** ① 대관자가 허가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대관자 부담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대관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창작스튜디오 입주)** ①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입주자”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주를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창작스튜디오 입주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창작스튜디오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기숙사 운영)** 군수는 수탁자 및 입주자의 휴식 및 정보교류 공간 지원을 위하여 스페이스 미조 안에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 스페이스 미조의 대관허가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스페이스 미조 대관(사용)료 및 반환기준(제16조 및 제18조 관련)

#### 1. 대관(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용도	기준	금 액	비 고
해박요 미조	다목적홀	오전	40,000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종일 09:00 ~ 18:00 * 준비·철수기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오후	40,000	
		종일	80,000	
미조 홀 2	전시실	오전	40,000	
		오후	40,000	
		종일	80,000	
오픈스튜디오	창작스튜디오	1개월	250,000	* 공공요금 포함

#### 2. 대관(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환불사유(환불 신청일)	환불기준	비고
시 설 사용료	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100퍼센트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100퍼센트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80퍼센트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70퍼센트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50퍼센트	

[별지 제1호서식]

스 페 이 스 미 조 대 관(사 용)(변 경)허 가 신 청 서

신 청 인	단 체 명		대표자명	(남/여)	
	주 소				
	성 명 (신 청 인)	(남/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유선번호		이동전화		
	FAX		e-mail		
신 청 사 항	공연(전시)명				
	대관(사용) 시설명	<input type="checkbox"/> 해박요 미조(다목적홀) <input type="checkbox"/> 미조홀 2 <input type="checkbox"/> 그 외 (      )			
	사용자 시설(장비)				
	대관(사용) 세부 현황				
	준비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공연(전시)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철수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관람예상 인원	약(      )명 / 1일			
관 랑 료					
대관(사용)료		대관(사용)료 감면 여부(사유)			
공연(행사) 주요 내용	※ 첨부 : 공연 / 행사계획서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 관(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스페이스 미조 대관(사용)(변경)허가서

대관 (사용자)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대관 (사용 내역)	공연(전시)명							
	대관(사용) 시설명	<input type="checkbox"/> 해봐요 미조(다목적홀)		<input type="checkbox"/> 미조홀 2		<input type="checkbox"/> 그 외 ( )		
	대관(사용)자 시설(장비)							
	대관(사용)(변경) 허가 세부현황							
	준비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공연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철수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관람예상 인원							
	관 램 료							
	대관(사용)료	대관(사용)료						
대관(사용)료 내역								

허 가 조 건

1.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대관(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스페이스 미조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전자담배 포함)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대관(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허가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중 발생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대관자가 수거·처리 하여야 합니다.
8. 대관(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 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남해군 조례 제2458호

##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운영

-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 7. 예산과 회계
- 8. 정관의 변경
- 9. 해산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
-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 및 보조)**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출연금 및 보조금
- 2. 재단사업 수입금
-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
-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 3.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 4. 관광 관련 공모사업, 관광업무 컨설팅
- 5. 남해군의 관광관련 위탁사업
- 6. 문화예술자원 개발 및 운영 등 문화콘텐츠 확충사업
- 7. 축제 기획 및 총괄 추진
- 8. 문화 관련 공모사업
- 9. 바래길 및 코리아둘레길 콘텐츠 개발 및 시설 관리
- 10.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8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

③ 이사는 남해군 관광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관광 및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이사 임명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행정·법률·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그 밖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 ① 재단에는 재단업무의 실무책임자인 본부장 1명을 포함하여 직원을 둔다.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남해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고·검사)**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459호

##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해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긴급재난소득의 안정적인 시행과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① 긴급재난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② 긴급재난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세부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정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60호

##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3. “사업계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 4.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사업 범위)** 신활력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남해 농산물 연구 인프라 구축, 특산물 및 마늘·한우 축제 활성화, 남해 농축산 종사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2.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도시재생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3.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앵커기업 유치,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

**제4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2장 추진단

**제6조(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직 구성)**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장은 민간추진위원장 또는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 중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이 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 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업무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업무
7. 그 밖에 군수가 신활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법인화 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근직원 인건비는 전액 지원한다.

④ 추진단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간접보조사업자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그 간접보조사업자와 기금납입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지시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 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사업 액션그룹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3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3조(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 4. 추진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5. 추진단장 선임
- 6. 그 밖에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사업비의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단체·기관의 장
  3. 업무 관련 공무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서장)
  4. 신활력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되어 있던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신활력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제4장 보 칙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61호

##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호, 제13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호,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급식지원센터” 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급식지원센터” 를 각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급식지원센터” 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식지원센터” 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급식지원센터의” 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급식지원센터” 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 한다.

③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직영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62호

##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외부강의등을” 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로, “미리” 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를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로 한다.

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5항중 “외부강의등을” 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자문하여야 한다” 를 “자문할 수 있다”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74호

**남해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5월 2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39조” 를 “제37조” 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 를 각각 “한국거래소” 로 한다.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남해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 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남 해 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 1.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 00.00.00. 제출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 00.00.00. 제출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055-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② 선정대리인 용

○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 00.00.00. 제출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055-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관인생략



남해군 규칙 제1175호

##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송자”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조례 제13조에 따라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남해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계획을 통지받으면 급식 지원신청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급식 지원신청 및 사용계획서를 접수하면 급식지원계획의 예산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4조(보조금의 정산)**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생산자(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식재료 목록에서 엄선하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자 및 배송자의 사무처리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대금의 수납 및 지급 등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수산업무 담당팀장, 축산업무 담당팀장, 남해군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보건급식담당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 유통안전성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2명(초등 1명, 중·고등학교 1명)
2.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3명(초·중·고등학교 각 1명)
3.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4.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그 밖에 공공급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급식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고 급식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배송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급자 선정 등)**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개모집을 위해 남해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급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급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⑤ 선정된 공급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와의 협약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역 농산물은 생산자와의 계약재배 또는 공모를 통하여 공급하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은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품목 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려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송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현장조사를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2조(공급자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공급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배송자 선정 등)** 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 는 “배송자” 로 보며, 제7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배송자의 의무)** ① 배송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송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의 설비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는 건강진단서(보건증)를 지참하여야 하며,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배송자는 학교 검수담당자의 입회하에 대면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확인서를 받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배송자는 식재료가 배송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배송자의 지정 취소 등)** 배송자의 지정 취소·정지의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 는 “배송자” 로 본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 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건설교통과장)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66번지 외 4필지
6. 점용면적 : 1,159㎡
7. 점용기간 : 2020. 5. 22. ~ 영구

남해군 고시 제 2020-90호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25.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79,622,638	546,685,682	32,936,956	
일 반 회 계	476,053,536	437,185,602	38,867,934	
특 별 회 계	103,569,102	109,500,080	△5,930,978	
상수도특별회계	20,920,617	20,968,126	△47,509	
청사건립특별회계	55,023,415	60,765,300	△5,741,88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96,432	773,913	22,519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72,790	702,825	169,96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42,831	708,444	△65,613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25,313,017	25,581,472	△268,455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b>합 계</b>	<b>476,053,536</b>	<b>437,185,602</b>	<b>38,867,934</b>	
지 방 세 수 입	21,888,585	21,888,585	-	
지방세	21,888,585	21,888,585	-	
세 외 수 입	17,184,898	16,445,131	739,767	
경상적세외수입	6,228,064	6,117,360	110,704	
임시적세외수입	10,956,834	10,327,771	629,063	
지방교부세	171,880,000	171,635,000	245,000	
조정교부금등	24,014,281	18,232,044	5,782,237	
보조금	190,399,717	168,106,561	22,293,156	
국고보조금등	143,691,309	126,109,602	17,581,707	
도비보조금등	46,708,408	41,996,959	4,711,44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686,055	40,878,281	9,807,774	
보전수입등	37,450,795	40,450,569	△2,999,774	
내부거래	13,235,260	427,712	12,807,548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b>합 계</b>	<b>103,569,102</b>	<b>109,500,080</b>	<b>△5,930,978</b>	
지방세				
세외수입	5,135,454	5,002,700	132,754	
경상적세외수입	4,882,000	4,844,700	37,300	
임시적세외수입	253,454	158,000	95,454	
지방교부세				
보조금	12,627,234	12,627,980	△746	
국고보조금등	11,079,502	11,478,635	△399,133	
도비보조금등	1,547,732	1,149,345	398,38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806,414	91,869,400	△6,062,986	
보전수입등	54,392,243	53,695,669	696,574	
내부거래	31,414,171	38,173,731	△6,759,560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476,053,536	437,185,602	38,867,934	
인 건 비	62,533,123	61,440,035	1,093,088	
물 건 비	30,300,160	29,978,254	321,906	
경 상 이 전	155,206,529	142,769,399	12,437,130	
자 본 지 출	181,928,244	151,666,647	30,261,597	
용 자 및 출 자	27,600	-	27,600	
보 전 재 원	-	-	-	
내 부 거 래	31,686,171	39,945,731	△8,259,560	
예 비 비 및 기 타	14,371,709	11,385,536	2,986,173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103,569,102	109,500,080	△5,930,978	
인 건 비	3,732,875	3,717,175	15,700	
물 건 비	5,565,082	5,784,811	△219,729	
경 상 이 전	4,629,715	4,694,166	△64,451	
자 본 지 출	37,789,665	30,041,359	7,748,306	
용 자 및 출 자				
보 전 재 원	818,091	590,025	228,066	
내 부 거 래	50,925,091	64,647,228	△13,722,137	
예 비 비 및 기 타	108,583	25,316	83,267	

남해군고시 제2020 - 92호

### 냉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일원에 추진 중인 냉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냉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3.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냉천마을 일원
- 4. 사업 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찬새미 치유회관 : 변경 없음
      - 마을회관 리모델링, 휴게 및 다용도실 증축(A=28.16㎡)
    - 찬새미 공동죽육탕
      - 당초 : 비가림 시설(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 변경 : 비가림 시설(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옹벽보강, 우물보수 1식
    - 찬새미 마실 산책로
      - 당초 : 산책로 포장(B=5.0m, L=107m)
      - 변경 : 아스콘 포장(B=3~5m, L=120m)
  - 지역역량강화계획 : 변경 없음
    - 홍보, 마케팅 및 주민교육
- 5. 총 사업 비(변경없음) : 494백만원(국비 346, 지방비 148)

6. 사 업 기 간

○ 당초 : 2017년~ 2020년 5월

○ 변경 : 2017년~ 2020년 6월

7.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관련 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화(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0 - 93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일

###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323외 2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6.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여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77-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323	20090427	남해본섬과 장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면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48-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 63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마을 앞의 모습이 거문고와 닮았다 하여 금성이라 불렀으나 이후 쇠고 부르기 좋게 금송이라 고쳤다고 함
3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79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노량로 267-29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하늘에 노출된 다리가 생긴 것을 예언하여 생긴 지명이라는 설이 있음
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인포리 269-9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336	20090427	무지개 모양의 고개인 무지개굴이 위치한 길임을 반영
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5-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189	20090427	무지개 모양의 고개인 무지개굴이 위치한 길임을 반영
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길로 452	20090427	행정리를 이용, 마을주변에 바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 다섯 군데의 신이 있다하여 유래
7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563-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로 234	20090427	행정구역명 이용, 옛 지명인 우물계의 한자표기임
8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20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로 5	20090427	행정구역명 이용, 옛 지명인 우물계의 한자표기임
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354-3, 354-11, 354-12, 354-1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죽방림로 65	20090427	남해의 특산물인 죽방림 열차가 생산되는 해안을 따라 이어진 도로임을 반영
1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1108-1, 110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죽방림로 137-1	20090427	남해의 특산물인 죽방림 열차가 생산되는 해안을 따라 이어진 도로임을 반영
1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27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한재로 247-12	20090427	산두목이라는 고개의 동쪽인 동한재(동대)와 서쪽인 서한재(서대)를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970-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302-9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47-3, 47-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180번길 37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66-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3068번길 73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373-11, 산365-18, 산373-9, 811-2, 811-18, 811-26, 811-30, 811-34, 물건리 16-15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 132-13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88-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28	20091023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48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264번길 67-19	20090427	삼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산61-1, 산61-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직개로177번길 92	20091023	직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7-4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221번길 6	20090427	흥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 103-6	20200527	건축물 멸실로 인한 현행화
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180번길 35	20200529	건축물 멸실로 인한 현행화
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9-9	20200525	건축물 멸실로 인한 현행화
4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승로483번길 45-3	20200525	건축물 멸실로 인한 현행화

남해군 고시 제2020 - 96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16호, 소로2-22, 소로2-26호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77-127호(1977.01.27.)로 최초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교통 시설:도로)에 대해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아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소로2-16호 개설공사
  - 도시계획도로 소로2-22호(남해성당~아름다운교회) 개설공사
  - 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화전도서관~봉황산) 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공사명	노선번호	위치	연장(m)	폭(m)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16호 개설공사	소로2-16호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일원	228	8	
도시계획도로 소로2-22호 (남해성당~아름다운교회) 개설공사	소로2-22호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일원	102	8	
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 (화전도서관~봉황산) 개설공사	소로2-26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일원	165	8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불임참조

##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6)에 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소로2-16호)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계				6,331	2,025						
1	남해읍 북변리	479-10	대	136	4	김○혜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2	남해읍 북변리	480-3	대	70	70	남해군					
3	남해읍 북변리	481-3	대	126	126	남해군					
4	남해읍 북변리	615	도	1,230	37	국(국토 교통부)					
5	남해읍 북변리	484	대	152	30	서○숙	남해읍 북변리				
6	남해읍 북변리	484-1	대	53	53	남해군					
7	남해읍 북변리	483-1	대	96	96	남해군					
8	남해읍 북변리	487	대	188	188	남해군					
9	남해읍 북변리	493-2	답	1,853	331	반○석	남해읍 남변리				
10	남해읍 북변리	492-10	답	484	336	김○관	남해읍 화전로	새남해새 마을금고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근저당	
11	남해읍 북변리	491	답	86	8	최○례	남해읍 서변리				
12	남해읍 북변리	466-1	답	1,146	46	이○자	남해군 고현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근저당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13	남해읍 북변리	466-6	답	232	232	지○선 외 1인	남해군 창선면	남해농업 협동조합	남해읍 북변리	근저당	
14	남해읍 북변리	467	답	479	468	하○인	남해읍 화전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근저당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소로2-22호)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계				3,504	1,018						
1	아산리	376-3	전	34	34	한○숙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남해신O OO합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근저당	
2	아산리	240	도	2,645	216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3	아산리	253-11	대	3	3	대한예수 OOOOO OOO교 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4	아산리	242-7	대	10	10	반○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5	아산리	242-3	전	34	34	박○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6	아산리	375-1	묘	169	169	이○춘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105번길				
7	아산리	377-10	전	93	93	이○자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8	아산리	387-27	대	20	20	이○일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9	아산리	377-9	전	33	33	유○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10	아산리	387-26	대	5	5	박○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주식회O OO행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근저당	
11	아산리	387-21	대	43	43	박○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12	아산리	387-24	대	123	123	김○기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13	아산리	387-23	대	16	16	김○기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14	아산리	386-1	대	96	84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5	아산리	387-22	대	111	111	박○이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남해군신O OO합	남해군 남해읍 사변리	근저당	
16	아산리	387-1	도	69	24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 남 해 군 공 보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소로2-26호)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계				<b>5,956</b>	<b>1,583</b>						
1	아산리	352	도	989	131	남해군					
2	아산리	351-6	답	463	463	이O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	아산리	350-41	대	4	4	장O정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4	아산리	350-1	도	135	6	남해군					
5	아산리	1425	도	2,489	32	국(국토 교통부)					
6	아산리	1421-4	구	958	29	국(농림 축산식품부)					
7	아산리	256-5	대	53	53	남해OOO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	아산리	257	대	53	53	남해OOO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	아산리	259-4	대	171	171	남해OOO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0	아산리	258-4	대	81	81	남해OOO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1	아산리	259-3	대	340	340	남해OOO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2	아산리	261-1	전	122	122	이O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	아산리	262-1	전	98	98	이O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718호

## 분묘개장 공고(2차)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이동면 초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내에서 발견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 남 해 군 수

##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소재지	지 번	지목	분묘기수
경남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산 40-1, 산42-1, 산 40-6, 산 40-7	임	유연분묘 무연분묘 20기
	산 42-2, 산 40-3, 산 40-4, 산 40-5, 1675-1	도	
	1676-2	묘	

2. 개장사유 : 이동면 초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3. 공고기간 : 2차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계인)와 협의 후 개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인 임의 개장
- ※ 안치 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추모노리 봉안당 (봉안 후 10년간 안치)

5. 신고처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055-860-3314, 3317)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7.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거나 누락된 분묘 또는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같음합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719호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 남 해 군 수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140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미조 송정	299,000	2020.05.27 2030.05.26 (10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82, 109동-402호 (문래힐스테이트)	김대욱	재개발

○ 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63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미조 송정	299,000	2010.05.27. 2020.05.26. (10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942번길 19	김대욱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남해군 공고 제2020 - 728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남 해 군 수

####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 가. 행정예고 기간 : 2020. 5. 28. ~ 2020. 6. 18.(21일간)
- 나. 의견제출 기간 : 2020. 5. 28. ~ 2020. 6. 18.(21일간)
- 다.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남해군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0년 6월 18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860-3294)

라. 제출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마. 문의처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055-860-3294)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세부현황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유형	등급	면적 (㎡)	
금천지구	삼동면 동천리 362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역	D	11,695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5.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내용	비고
금천지구	2022년 이후	· 급경사지 정비 11,695㎡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7.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 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야함.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2. 주민 의견 제출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1부. 끝.



붙임1

금천지구 위치도 및 현황사진

금천지구 위치도



### 금천지구 현장사진



남해군 공고 제2020 - 729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남 해 군 수

###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 가. 행정예고 기간 : 2020. 5. 28. ~ 2020. 6. 18.(21일간)
- 나. 의견제출 기간 : 2020. 5. 28. ~ 2020. 6. 18.(21일간)
- 다.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3. 의견제출

-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남해군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기한 : 2020년 6월 18일까지
-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860-3294)
- 라. 제출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마. 문의처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055-860-3294)
-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세부현황**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유형	등급	면적(m <sup>2</sup> )	
양화금지구	삼동면 동천리 산311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역	D	2,120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5.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내용	비고
양화금지구	2022년 이후	· 급경사지 정비 2,120m <sup>2</sup>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7.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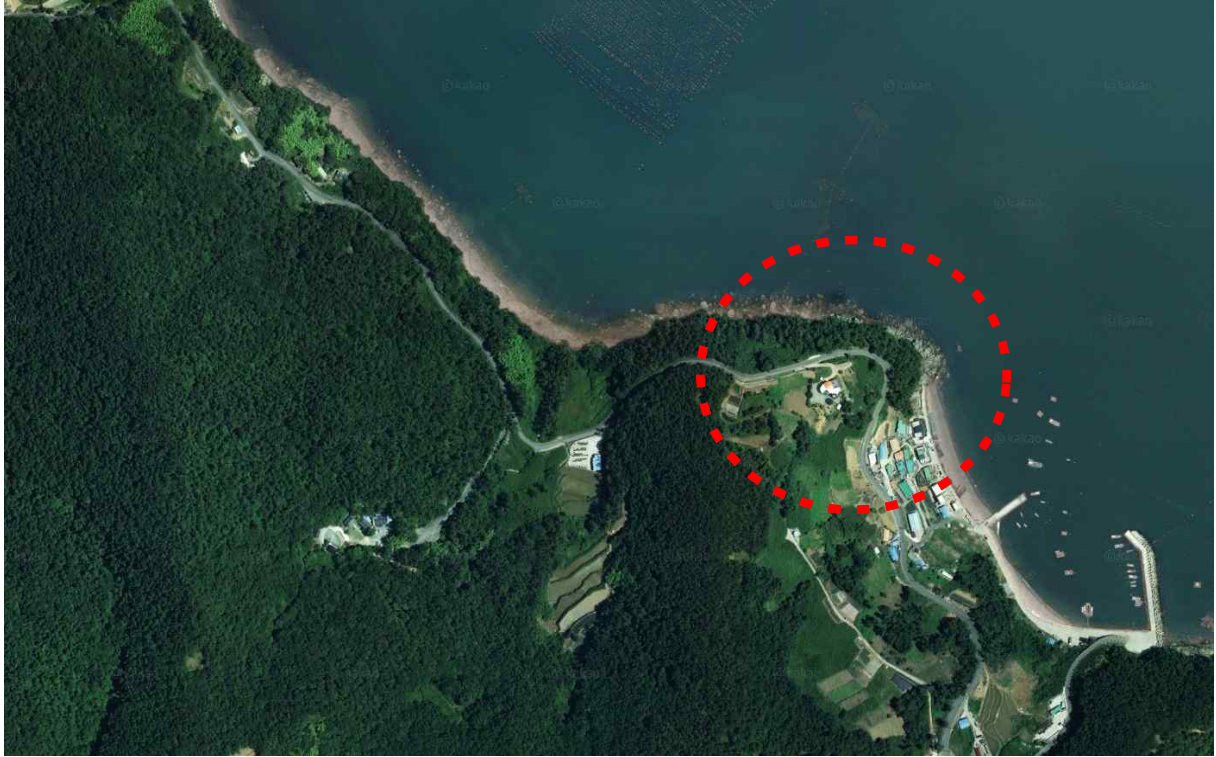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 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야함.

-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끝.

**붙임1**

**양화금지구 위치도 및 현황사진**

**양화금지구 위치도**



### 양화금지구 현장사진



남해군 공고 제2020 - 730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남 해 군 수

###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 가. 행정예고 기간 : 2020. 5. 28. ~ 2020. 6. 18.(21일간)
- 나. 의견제출 기간 : 2020. 5. 28. ~ 2020. 6. 18.(21일간)
- 다.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3. 의견제출

-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남해군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기한 : 2020년 6월 18일까지
-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860-3294)

- 라. 제 출 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마. 문 의 처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 (☎055-860-3294)
-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세부현황**

지 구 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 사유
		유 형	등 급	면 적(m <sup>2</sup> )	
큰양아지구	상주면 양아리 산209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역	D	12,540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5.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 구 명	사업시기	사 업 내 용	비고
큰양아지구	2022년 이후	· 급경사지 정비 12,540m <sup>2</sup>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7.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 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야함.

-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 2. 주민 의견 제출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1부. 끝.



붙임1

큰양아지구 위치도 및 현황사진

큰양아지구 위치도



### 큰양아지구 현장사진



남해군 공고 제2020 - 731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남 해 군 수

###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 가. 행정예고 기간 : 2020. 5. 28. ~ 2020. 6. 18.(21일간)
- 나. 의견제출 기간 : 2020. 5. 28. ~ 2020. 6. 18.(21일간)
- 다.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3. 의견제출

-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남해군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기한 : 2020년 6월 18일까지

-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860-3294)
- 라. 제출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마. 문의처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055-860-3294)
-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세부현황**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유형	등급	면적(m <sup>2</sup> )	
천동지구	고현면 포상리 988-8번지 일원	붕괴위험지역	D	7,844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5.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내용	비고
천동지구	2022년 이후	· 급경사지 정비 7,844m <sup>2</sup>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7.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 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야함.

-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 2. 주민 의견 제출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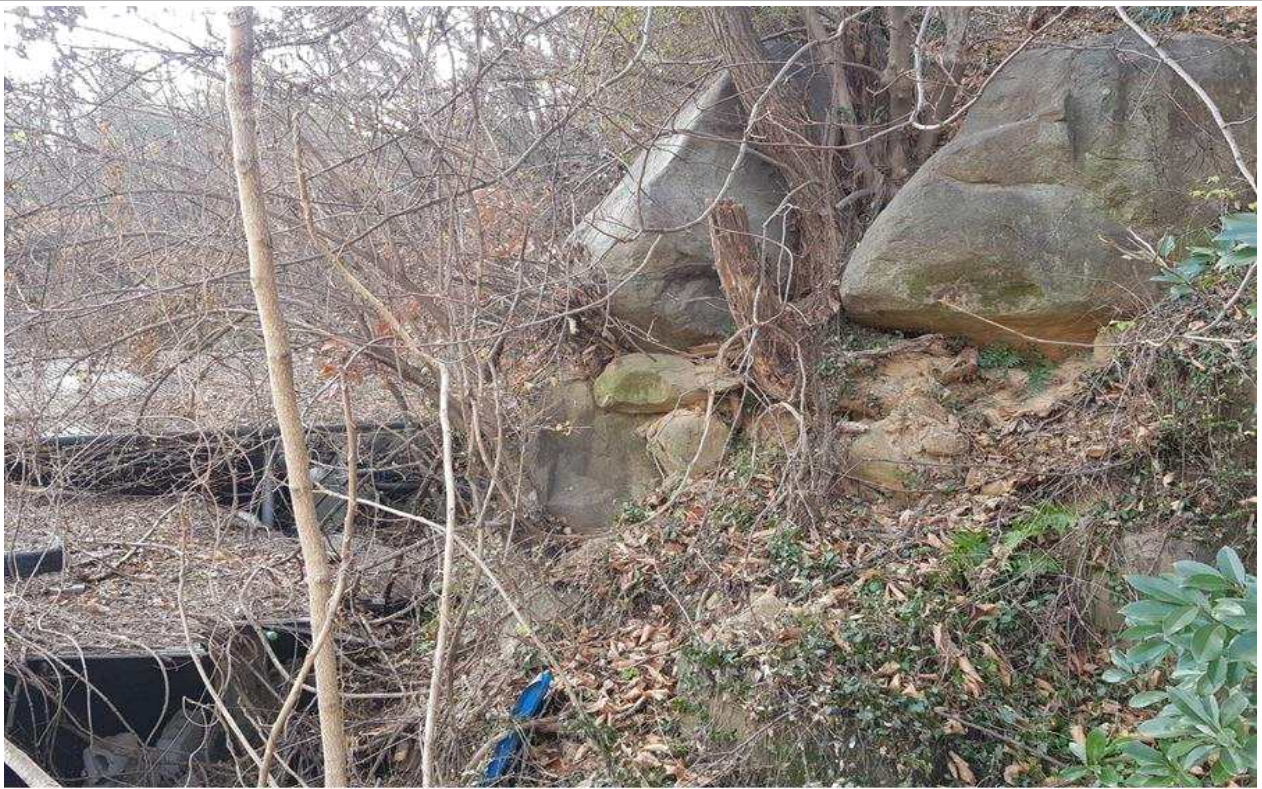
**붙임1**

**천동지구 위치도 및 현황사진**

**천동지구 위치도**



### 천동지구 현장사진



남해군 공고 제2020 - 732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남 해 군 수

###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 가. 행정예고 기간 : 2020. 5. 28. ~ 2020. 6. 18.(21일간)
- 나. 의견제출 기간 : 2020. 5. 28. ~ 2020. 6. 18.(21일간)
- 다.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3. 의견제출

-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남해군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기한 : 2020년 6월 18일까지

-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860-3294)
- 라. 제출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마. 문의처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055-860-3294)
-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세부현황**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유형	등급	면적(m <sup>2</sup> )	
사항지구	미조면 미조리 산105-2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역	D	2,995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5.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내용	비고
사항지구	2022년 이후	· 급경사지 정비 2,995m <sup>2</sup>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7.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 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야함.

-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 2. 주민 의견 제출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1부. 끝.



**붙임1**

**사항지구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항지구 위치도**



**미조면 미조리 산105-2번지 일원  
L=154.0m, B=14.0m, H=17.0m**

### 사항지구 현장사진



남해군 공고 제2020 - 734호

### 군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녹지)] 공사완료 공고

남해군 고시 제2019-1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남해군계획시설(녹지)의 재해방지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 남 해 군 수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30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공간시설:녹지) 사업
- 명 칭 : 아난티남해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재해예방공사

3. 사업 시행면적 및 규모

공사명	시설종류	위치	사업면적	비고
아난티남해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재해예방공사	공간시설 (녹지)	남해군 남면 덕월리 307-1번지 일원	2,86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아난티 대표이사 이만규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818-105

5. 사업 시행기간 : 2019. 2. 28. ~ 2020. 5. 27.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

남해군 공고 제2020 - 737 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28일

### 남 해 군 수

1. 사용 및 폐기 개시일 : 2020. 5. 1.

2. 사유

가. 일반 공인 폐기·등록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  
변경으로 폐기 및 새로 제작 등록

나. 인증기 공인 등록 : 통합민원발급기 추가로 신조 등록

3. 등록, 폐기 공인명·인영

가.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여성 발전기금출 납원인	1.8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폐기		주민복지과

나.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양성 평등기금출 납원인	1.8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등록		주민복지과
미조면장인 통합민원전 용	2.0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등록		미조면
남해읍장인 통합민원전 용2	2.0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등록		남해읍

끝.

남해군 공고 제2020 - 753호

## 2020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관리·운영 위수탁 현황 공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및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및 제8조(관리·운영 위·수탁)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남 해 군 수

해수욕장별 관리 운영 위·수탁 현황

해 수 욕 장 명	위 탁 자	수 탁 자	이 용 안 내
상주은모래비치	남 해 군	상주번영회	☎ 055-863-3573
송정솔바람해변		송정번영회	☎ 055-867-3414
설리해수욕장		설리번영회	☎ 010-4849-6733
두곡.월포해수욕장		두곡번영회	☎ 010-4930-3277
		월포번영회	☎ 010-3554-8962
사촌해수욕장		사촌번영회	☎ 010-2240-0473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해 수 욕 장 명	개 장 기 간	개장일수	개 장 시 간
상주은모래비치	2020. 7. 7 ~ 8. 20 (※야간 : 2020.7.27.~8.10)	45	09:00 ~ 19:00 (※야간 : 09:00~21:00)
송정솔바람해변	2020. 7. 10 ~ 8. 23	45	09:00 ~ 19:00
설리해수욕장	2020. 7. 10 ~ 8. 23	45	09:00 ~ 19:00
두곡.월포해수욕장	2020. 7. 10 ~ 8. 23	45	09:00 ~ 19:00
사촌해수욕장	2020. 7. 10 ~ 8. 23	45	09:00 ~ 19:00

남해군공고 제2020 - 765호

###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군계획 시설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법 제 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 공사완료 공고대상 사업

번호	시설명	공사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1	도로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남해군 서변리 일원	도로개설 L=194m, B=12m	2018.10.02. ~2019.12.12.	